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203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박승일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89,663,7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63,7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21. 3. 18. 모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3. 26. 접수 제34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3. 24. C와 신용보증금액 8,500만 원, 신용보증 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간, 대출예정금액 1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3. 26.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C는 2021. 3. 22.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영농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021. 3. 26.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D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21. 3. 26.부터 2024. 3.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라. C는 2022. 7. 26.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23. 7. 28. D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8,875,7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차전59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3. 8. 25. ‘C는 원고에게 89,406,657원 및 그중 88,875,771원에 대하여 2023. 8.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98,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3.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 즉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인 89,663,7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9,663,708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3. 18.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3. 26.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22. 7. 26.에야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년여가 지난 2023. 7. 28.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조합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③ C가 이 사건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1. 3. 9.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을, 2021. 3. 15. C 소유의 선박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증서, 어선원부를 각 발급받는 등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C가 위 일자에 D조합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 22. C와 D조합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2021. 3. 24.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비로소 체결된 이상, C와 D조합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대출약정 또는 신용보증약정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선박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144,261,400원으로 감정되었다(2023. 6. 23.자 감정평가서 참조).

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C는 G조합, H조합 등에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연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⑥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C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채권자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도연

별지